

예수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5장 제36조에 의거 학생들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장) 본 대학원의 장학업무는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제4조(장학위원회의 구성) 본 대학원의 장학금지급정책 구성 및 운영 관리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장학생의 지급대상) 각종 장학생은 다음에 따라 선발한다.

1. 선발기준

- 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 나. 입학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다. 대학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는 자
- 라.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장학종류 및 지급 기준액) 본 대학원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학종류 및 지급금액

- 가. 성적우수 장학금 : 소정의 전 학기 학점을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B+ 이상인 우수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성적장학금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 나.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및 면학장학금 : 신입생으로서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및 대학원위원회에서 입학 시 지급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지급한다.
- 다. 교외장학금은 장학금을 출연하는 장학재단 또는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 2. 지급 기준액 : 본 대학원의 장학금 기준액은 매 학기마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장학금 지급액은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한다.

제7조(장학금의 배정) 장학금의 배정은 납입등록금 추정액과 장학생수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제8조(장학사정) 장학사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교외장학금은 출연하는 장학재단, 기관, 단체 또는 개인 기탁자의 정신과 장학금 사용목적에 우선하여 사정한다.

제9조(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장학금은 중복지급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교외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중복 지급할 수 있다. 단, 전체 장학금액이 등록금 총액을 초

과할 경우 초과되는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유가 발생한 해당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미등록 휴학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장학생으로 선발되고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 미만인 자 단, 2학년 2학기에는 예외로 둔다.
5.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자

제11조(운영세칙) 대학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